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 차 별 시 정 위 원 회

### 결 정

사 건 22진정0140600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질병관리청장

### 주 문

피진정인에게,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 지급대상이 되는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근로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이 유

####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이하 '감염관리수당'이라 한다) 지급 시 지급대상을 의료기관 원소속 근로자로 한정하였는데, 원소속 근로자와 업무내용이나 감염위험이 동일한 간접고용근로자에게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가. 진정한

위 진정요지와 같다.

### 나. 피진정인

1) ‘감염관리수당’은 국가지정 중증환자·준중증환자·감염병전담병원의 치료병동(병상) 최일선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2) 특히 2021. 12. 4차 유행 이후 위중증 환자 대폭 증가로 코로나19 방역에서 중등증 이상의 병원(병상) 및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정책적 판단하에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접촉빈도, 위험 노출, 업무난이도(업무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대상 기관(병원), 지급기간, 지급액 등을 결정하였다.

3) 또한 감염관리수당은 파견근무자와의 임금 격차로 인한 원소속 의료인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이탈방지 등 지속 가능한 의료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목적도 있다.

4) 2022년 당초 예산 1,200억 원과 1차 추경 600억 원으로 총 1,800억 원의 감염관리수당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입원 치료병상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등에 대해 9개월간 2만 명에 한정하여 지급토록 승인된 예산이나,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 폭증으로 수당 지급대상이 크게 늘어나 당초 추계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5)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을 시행하면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접촉빈도·업무난이도(업무강도)·위험 노출 등 업무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였고, 또한 수당 지급 기관, 직종별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대해 관련 협회,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만약 감염관리수당 지급대상에 간접고용근로자를 포함한다면 예산 조기소진이 우려되는 등 사업목적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6) 또한 간접고용근로자에게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개별 용역업체를 파악하여야 하나, 각 의료기관에서 수당 신청 및 지급업무 대행 역할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하기 곤란하며, 근로자 개인별로 신청을 받는다면 행정인력과 비용이 발생하고 사업 지연의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

###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노동조합 위원장이며, 피해자는 동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 코로나 병동에서 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협력업체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이다.

나. 피진정인은 국가지정 중증환자·준중증환자·감염병전담병원의 치료병

동(병상)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감염관리수당 제도를 도입하였다.

다. 감염관리수당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 의 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중 원소속 인 력에게 지급되며, 코로나19 환자 접촉빈도·업무난이도·위험 노출 등 업무여 건을 고려하여 수당 지급대상과 직종별 지급액이 결정되었다.

라. 피진정인이 당초 감염관리수당으로 확보한 예산은 약 1,800억 원 규 모였으나, 오미크론 변이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중증환자 및 준중증 환자 병상이 증가함에 따라 수당 지급대상자도 증가하여 소요예산 추계액은 당초 확보한 예산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마. 보건복지부는 2021년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 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에 대해, “감염병관리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지원금은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코로나19 감염병 격리입원 치료환자 를 기준으로 공단에 의료수가를 청구할 때, 지원금을 포함하여 청구하고 각 의료기관이 수령한 지원금을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게 배분하는 방식이 었다. 서울특별시▽▽병원, 서울특별시▽▽병원, 서울특별시▽▽병원, ▽▽ ▽의료원 등의 의료기관은 수령한 지원금을 균등배분 또는 업무별 차등 배 분의 형식으로 간접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

##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사회적 신분 등 19가지 등의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임금)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고용형태가 차별사유에 해당하는지, 피진정인이 고용형태를 이유로 감염관리수당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고용형태’를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진정은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접고용근로자라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지급하는 감염관리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용(임금)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특히 고용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 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를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서 그러한 고용형태가 존속하는 이상 자신의 의사나 능력 발휘와 무관하게 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를 사회적 신분으로 판단해 왔다. 간접고용근로자는 장기간 점하는 지위이면서 개인의 의사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인격적 표지로서 소수자의 차별로 이어지기 쉬운 사회적 지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된다.

#### 나. 고용형태에 따른 감염관리수당 지급 여부 결정의 합리성 검토

피진정인은 감염관리수당 지급대상에서 간접고용근로자를 제외한 이유에 대하여, 당초 확보한 감염관리수당 예산 약 1,800억 원이 보건의료인 2만 명에 대해 9개월간 지급할 예산이며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지급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예산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점, 간접고용근로자의 경우 의료기관 소속이 아니므로 해당 의료기관이 수당 신청과 지급 업무를 대행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강제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관리수당의 지급 취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간호하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고, 환자 접촉빈도·업무난이도(업무강도)·위험 노출 등 업무여건을 지급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유는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유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간접고용근로자를 배제할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

2021년에 지급된 지원금의 경우 의료기관이 간접고용근로자의 몫까지 의료수가에 반영하여 신청한 후 균등배분 또는 업무별 차등배분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접고용근로자의 수당 신청 및 지급 업무를 의료기관이 대행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상황을 미리 예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진정인은 수당 지급 기관, 직종별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관하여 보건의료노조, 간호협회, 병원협회, 의료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하나, 보건의료노조와의 2021. 9. 2.자 합의 내용은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을 제도화한다'는 것일 뿐 보건의료인력의 정의에 간접고용근

로자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감염관리수당의 지급 목적 및 지급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지급 대상인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근로자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14.

위원장 남 규 선

위원 이 준 일

위원 김 수 정

<별지>

## 관련 규정

###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3(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지원 등)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0조의3제1항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또는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사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2022. 3. 22.]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여부,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